

1. 개정이유

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,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의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4121호, 2024. 1. 9. 공포, 1. 12. 시행)됨에 따라 이를 우리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고, 그간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도 일부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대상에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규제의 존속·재검토기한 심사 및 기존규제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(안 제2조)

나. 위원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, 임기 중 해촉 가능한 사유에 ‘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’를 추가(안 제4조)

다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서면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의결결과의 분류기준(원안의결, 수정의결, 재심의)을 마련(안 제6조 및 안 제9조)

라. 위원과 직접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안전에 대하여 당해 안전 심의·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안 제10조)

마. 심의·의결 과정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1.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1년으로 하고”를 “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6항”으로, “임기 중에도 해촉”을 “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개최한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⑤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, 수정의결 및 재심의결로 하고, 재심의

의결 시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위원장 또는”을 “위원장,”으로, “위원장이”를 “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5항)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6항과 제7항”을 “제9항과 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개최한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⑥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, 수정의결 및 재심의결로 하고, 재심의

의결 시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.

⑫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.

1.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2.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거나, 위원이
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안건인 경우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
②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 제3항 중 “지원으로”를 “직원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4항”을 “제9조제11항 및 제11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안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보

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설치)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규제개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2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	1.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
2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재심사요청에 관한 사항	<삭 제>
3. (생략)	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4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	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---.
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	② -----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6항 -- 해당위원을 해촉(解囑)---.
1.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	<삭 제>
2.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	<삭 제>

하여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

3.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<신설>

<삭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개최한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 결,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, 재심의 의결 시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

④ ~ ⑦ (생략)

제9조(분과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.

⑥ ~ ⑨ (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
제9조(분과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, -----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개최한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

③ 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⑤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⑥ (생략)

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.

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

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⑥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 결,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, 재심의 의결 시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.

⑦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⑧ -----

-----, <후단 삭제>

⑨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⑩ 제8항-----

--.

⑪ 제9항과 제10항-----

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⑫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.

1.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거나, 위원이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안건인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
②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<u>제10조</u> ① ~ ② (생략) ③ 운영지원반원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규제개혁팀 소속 <u>지원으</u> <u>로</u> 한다. ④ ~ ⑤ (생략) <u>제11조</u>(후속조치) 안전 담당부서 는 <u>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4항</u> 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 <u>제12조 · 제13조</u> (생략)	<u>제11조</u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직원으</u> <u>로</u> 한다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12조</u>(후속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조제11항 및 제11</u> <u>조제4항</u>----- --. <u>② 안전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</u> <u>른 조치사항을 소관 분과위원회</u> <u>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제13조 · 제14조</u> (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)
---	---